

(대외사용주의) 이 자료는 2023.5.23일 작성되었으며, 향후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

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쟁점과 약사회 대응방안



(대외사용주의) 이 자료는 2023.5.23일 작성되었으며, 향후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

비대면진료 추진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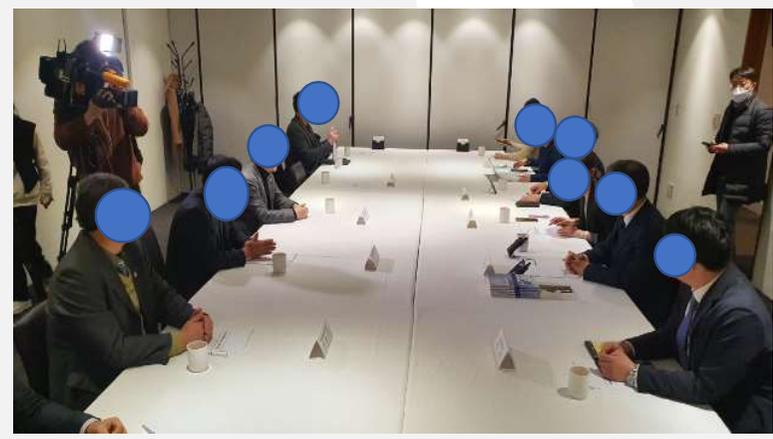
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예정(2023.5)

- 세계보건기구(WHO)에서 ‘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’를 해제 및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도 하향 예정 (6월 1일)
- 현재 '심각' 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(경계) 시 **비대면진료 금지(불법)** →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어플 중단해야
“시범사업으로 비대면 방식 진료 이어가겠다”



보건복지부 - 의사협회 비대면진료 추진 합의(2023.2)

-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제안에 따라,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더라도
 - 1) 대면진료 원칙 유지와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
 - 2) 재진에 한해 허용하며
 - 3)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함
 - 4)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함



(대외사용주의) 이 자료는 2023.5.23일 작성되었으며, 향후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

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우려 점

보건의료생태계 파괴(보건의료 영리화)

- 플랫폼이 보건의료 공급체계의 연결망이 될 때, 플랫폼의 영위를 위한 새로운 사업영역을 창출해야 함
- 보건疫료를 사업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면 오남용 조장 등의 마케팅이 확대될 수밖에 없음
- 약국이 플랫폼에 종속 우려(약국 간 출혈경쟁 유도)



플랫폼의 각종 불법 행위 방치(환자 유인 행위, 의료 쇼핑 조장 등)

-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시행 중 마련된 플랫폼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유명무실
- 시범사업 동안 플랫폼의 각종 불법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는 수시로 고발 등 플랫폼 모니터링 체계 필요



(대외사용주의) 이 자료는 2023.5.23일 작성되었으며, 향후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

시범사업 추진방안

실시 기관

의원급 원칙, 병원급 예외적 허용, 약국

대상환자

의원급 의료기관 : 재진 환자 중심, 일부 예외

- 1) 만성질환자 :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 11개 질환 환자로 1년내 동일상병, 동일의료기관 진료
- 2) 기타질환자 : 30일 내 1회 이상 대면진료 후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
- 3) 일부 초진 : 섬·벽지 환자, 거동불편자(노인, 장애인), 감염병 확진환자, 휴일·야간 소아환자

병원급 의료기관 : 희귀질환자, 수술·치료 후 지속적 관리*가 필요한 재진 환자

*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, 검사 결과의 설명

진료방식

화상통화 원칙

의약품 전달

본인 수령, 대리 수령, 재택 수령*

* 섬·벽지 환자, 거동불편자(노인, 장애인), 휴일·야간 소아환자, 감염병 확진환자, 희귀질환자

처방전 전달

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·이메일로 송부(약국 자동배정 금지, 위치기반 모든 약국 표출)

준수사항

본인확인, 진료실 외 진료 등 부적절한 비대면진료 금지, 전담운영기관 금지, 마약류·오남용약 처방 금지

(대외사용주의) 이 자료는 2023.5.23일 작성되었으며, 향후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

해결되지 않은 쟁점 (2023.5.23 현재 기준)

- 대체조제 간소화(반영 중)
- 플랫폼의 정보 저장 금지
- 처방 일수의 제한
- 탈모약 등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 금지(반영 중)
- 처방전 원본 보관 의무(검토 중)
- 팩스 처방전의 적합성
- 기타질환의 모호성
- 소아에 대한 야간 · 휴일 초진 허용의 위험성

(대외사용주의) 이 자료는 2023.5.23일 작성되었으며, 향후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

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응 방안

비대면 방식 진료 시범사업을 막을 수 없다면, 전략은?

○ 시범사업을 막을 수 없는가?

- 시범사업 자체는 행정부 고유 권한에 속해 제도적으로 불가
- 시범사업의 절차적 **부당성에 대해 법적 대응 검토중**
- 비대면 방식 진료와 조제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**참여자 법적 다툼의 여지 있음**
- **시범사업에서 약국의 주도권 확보하고 플랫폼 횡포 저지는 회원 단결로만 가능**

○ 비대면 방식 진료에 대한 약사회 주장

-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**사후통보 간소화** = 반영 중
- 환자의 위치기반 모든 약국 표출 등 **약국 선택권 보장** = 공적처방전달시스템으로 해결
- 플랫폼의 개입없이 **약사 주도의 합법적인 조제약 전달** = 대면전달 원칙 사수
- 비대면 플랫폼 업체의 **불법행위에 대한 관리·감독** 기구 마련 = 반영 중
- **표준화되고 개방화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** 구축 = 미반영 (시간 부족)

(대외사용주의) 이 자료는 2023.5.23일 작성되었으며, 향후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

회원 행동지침

정책 목표

1. (약국 피해 최소화) 시범사업을 저지할 수 없다면, 시범사업 지침에 약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
2. (본사업 추진 대비) 국회에서 논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 심의에 약사.약국 권익 수호

추진 계획

1. 행정소송(가처분 신청), 헌법소원, 준법투쟁, 감사청구, 모니터링, 정보공유 등
2. 약사회 대응방안에 대한 회원 홍보 및 교육
3. 의료 영리화 반대 세력 연대
4. 공적처방전달시스템 개발로 디지털헬스 시대 대비(플랫폼 종속 해방 위해 전회원 참여)

회원 행동지침

1. (가칭)공적처방전달시스템 전원 가입
2. 플랫폼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불법 사례 공유